■ 인감증명법 시행령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0. 2. 18.> (앞쪽)

[ ]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·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
[ ]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
[ ] 세무서(세무서장) 확인서

인감위임장은 위임자 자필로 작성 (대리인 작성시 발급불가)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,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.

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.

※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,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
[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]

작성 (본인)

위임자	성 명	(서명 또는 날인)	주민등록번호	-	
	국 적		주 소		
	신분증 종 류		용 도	발급통수	
대리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관 계	
위임 사유		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[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]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
주 소				
관 계		발급통수	인감 ㊞ 또는 서명 ※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	

(성명:)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위의 위임(동의)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[ ] 재외공관(영사관) (서명 또는 인)

[ ] 수감기관(교도관) _____(직인), _____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확인	부동산 종류	
	부동산 소재지	

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세 무 서 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